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43
----------	-----

2023. 7. 21.(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박지현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3년 6월 30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7월 5일

라. 상정일자 : 2023년 7월 13일

- 제4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유재목 의원)

가. 제안이유

-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침수 피해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침수방지시설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 및 침수 피해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김홍식 수석전문위원)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기상청이 발표한 최근 10년간 자료에 의하면(2011년~2020년), 전국에서 침수피해와 관련이 있는 호우가 4,833건, 풍랑이 5,143건, 폭풍해일이 41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전체 풍수해의 51.8%를 차지함.
- 충북도의 경우, 해안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 풍랑과 폭풍해일을 제외한 호우만 산정하더라도 침수피해가 전국 풍수해의 25.0%로 1/4에 달함.
- 따라서,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이 필요한 지역이나 건축물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참 고

우리 도를 제외한 전국 12개 시·도에서 유사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임.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정일	22.12.30	16.01.01	-	23.02.20	23.02.23	23.04.21	-	23.07.10
시·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제정일	23.04.11	-	-	23.07.07	23.03.30	22.12.26	23.05.10	23.06.07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풍수해는 폭풍우에 의해 발생하는 복합재해형태로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집중호우가 빈번하고, 그 피해정도가 심해지는 추세이므로 본 조례안은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음.

○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는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노력해야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5조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함.
- 안 제6조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과 침수 피해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7조는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규정함.
 - 안 제8조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충청도 및 시·군 홈페이지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9조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시·군, 자연재해 전문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그 밖의 조문이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조례안 예고("23. 7. 5.~ 7.11.)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본 조례안은 총 1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문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함.

라. 검토의견

- 「충청북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풍수해로부터 충청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 최근 들어 더욱 악화되는 기상이변에 따라 국지성 폭우와 지역적인 집중호우 등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규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상위법령과의 적합성이 인정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박지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3
----------	-----

발의연월일 : 2023년 6월 30일
발의자 : 박지현, 이동우, 김종필,
김호경, 박진희, 변종오,
유재목

1. 제안이유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침수 피해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침수방지시설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 및 침수 피해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마.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 다. 협의 : 충청북도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 라. 조례안 예고 : 2023. 7. 5. ~ 2023. 7. 11.(의회홈페이지)

충청북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충청북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물막이설비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건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소규모 상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풍수해로부터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책무) ① 도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도지사가 시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

원반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시·군별 물막이설비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현황 및 연도별 향후 설치 계획
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군, 관련 기관 등에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과 침수 피해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해 시·군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전문기관, 학계 및 단체 등에 의견수렴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대상) ① 도지사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기준·방법·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

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홍보 등) ① 도지사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충청북도 및 각 시·군 홈페이지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홍보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운영) 도지사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시·군, 자연재해 전문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22., 2013. 8. 6., 2014. 11. 19., 2016. 1. 27.,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2021. 6. 8., 2023. 4. 11.>

1. ~ 2. (생략)

3. “풍수해”(風水害)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4. ~ 18. (생략)

[전문개정 2011. 3. 7.]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1. 16., 2018. 8. 14., 2020. 6. 9., 2020. 8. 18., 2021. 12. 21., 2023. 6. 7.>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 29. (생략)

충청북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풍수해로부터 충청북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물 등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

2. 비용 발생 요인

-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도→시·군→건물주(거주자))

3. 관련조문

- 안 제7조(지원 대상)

4. 비용 추계결과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 2023 ~ 2027(5년간) 추계
- 지원대상 : 1,322개소(추정치, 전체 대상 중 0.5%* 적용)

* 과거 5년 침수 이력 0.32% + 재난 위험성 증가에 따른 가중치 0.18%

구분	총계	단독주택(단위: 건물 수)				공동주택(단위: 단지 수)				소규모 상 가
		소계	단독 주택	다중 주택	다가구 주 택	소계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주 택	
전체	264,435	255,006	251,559	183	3,264	5,513	4,846	556	111	3,916
지원	1,322	1,274	1,257	1	16	28	24	3	1	20

※ 최근 5년간 건물 침수(동): 총 843^{0.32%}(연평균 169, ²²29, ²¹9, ²⁰773, ¹⁹3, ¹⁸29)

※ 정확한 수요는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하여 예산 범위 내 지원 예정

- 지원단가 : (단독주택·소규모상가) 2,000천원 / (공동주택) 10,000천원

○ 추계 결과

- 5년간 총 세출액: 2,581,200천원(도비 903,420, 시·군비 1,677,780)
 - 총 설치비: $(1,274+20) \times 2,000$ 천원 + $28 \times 10,000 = 2,868,000$ 천원
 - 총 지원비: $2,868,000$ 천원 $\times 90\%$ *(자부담10%) = 2,581,200천원
 - 도비 지원비: $2,581,200$ 천원 $\times 35\%$ * = 903,420천원
 - *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군에 35% 지원(청주30%, 기타시군40%)
 - ※ '23년은 조례 제정 및 계획 수립, '24년부터 4년 지원으로 연간 225,855천원
 - 시·군비: $2,581,200$ 천원 $\times 65\% = 1,677,780$ 천원(연간 419,445천원)
- 재원조달방안 : 도비 35%(903,420천원), 시군비 65%(1,677,780천원)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	645,300	645,300	645,300	645,300	2,581,200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	645,300	645,300	645,300	645,300	2,581,200
재원 조달		-	645,300	645,300	645,300	645,300	2,581,200
자체 수입	소 계	-	225,855	225,855	225,855	225,855	903,420
	지방세	-	225,855	225,855	225,855	225,855	903,420
	세외수입	-	-	-	-	-	-
시·군비		-	419,445	419,445	419,445	419,445	1,677,780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	-	-	-	-	-